

사전감사대상



문서번호	자자 5011- 26			감 사 하	
처리기한	1996. .	보존기간	이 사 부총재 총 재		
기 안	1996. 1. 12	영구			
발 신	1996. .				
조사역	과 장 부부장 부 장				

기안자	김 재 호	합	(법규과)기획부장 하	전 결 근 거	「직무권한 분류표」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
소 속	자금부 자금과				
직 위	행원(중) 전화 4503	의			

수 신
참 조
제 목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

農水産物 輸出準備資金貸出의 融資對象品目 追加方案을 붙임1과 같이 檢討하고 붙임2와 같이 「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 細則」을 改正하고자 합니다.

- 붙 임 1.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의 용자대상품목 추가에 대한 검토 1부
- 2.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(안) 1부. 끝.

< 참고 > 수출물 관련인 관련 물 수출세칙

매년 1월말을 재계년 결산(ended)이후로 가장 수출하여

건(dried)이후는 연장보통금(普通金)이후를 연중 수출하여 수출

결정(決定)은 결산(結算)을 수반(手伴)하여 결산(結算)을

전후(前後)에 결산



사본수신처

한국은행 행내 021-10(80.11.19) ()

(결제서식)

발	업무	필요	타
송	연혁	불요	자
	기록		

(붙임2)

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(안)

現 行	改 正 (案)	備 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~제25조 (생 략)</p> <p>제26조(용자대상품목 및 용자기간)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의 용자대상품목과 용자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4 958 619 1220"> <thead> <tr> <th>자 금 별</th> <th>용자대상품목</th> <th>용자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수집자금</td> <td>김, 우뭇가사리, 갈저, 오징어, 톳</td> <td>9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비축자금</td> <td>삼견</td> <td>18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 춘견</td> <td>24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 추견</td> <td>21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미과제조용 찹쌀</td> <td>18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부잠사¹⁾, 갈저, 우뭇가사리, 통조림 용 굴, 백삼(미삼 포함), 통조림용 밤, 떡갈잎, 명개잎, 사과, 배, 냉동용딸기</td> <td>9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김, 양송이, 송이, 오징어, 톳, 뱀장어, 건미역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 : 1) 부잠사는 누에씨 생산농가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한함</p> <p>제27조~제37조 (생 략)</p> <p>(신 설)</p>	자 금 별	용자대상품목	용자기간	수집자금	김, 우뭇가사리, 갈저, 오징어, 톳	90일 이내	비축자금	삼견	180일 이내	춘견	240일 이내	추견	210일 이내	미과제조용 찹쌀	180일 이내	부잠사 ¹⁾ , 갈저, 우뭇가사리, 통조림 용 굴, 백삼(미삼 포함), 통조림용 밤, 떡갈잎, 명개잎, 사과, 배, 냉동용딸기	90일 이내	김, 양송이, 송이, 오징어, 톳, 뱀장어, 건미역		<p>제1조~제25조 (생 략)</p> <p>제26조(용자대상품목 및 용자기간)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의 용자대상품목과 용자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67 958 1161 1220"> <thead> <tr> <th>자 금 별</th> <th>용자대상품목</th> <th>용자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수집자금</td> <td>김, 우뭇가사리, 갈저, 오징어, 톳</td> <td>9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비축자금</td> <td>삼견</td> <td>18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 춘견</td> <td>24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 추견</td> <td>21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미과제조용 찹쌀</td> <td>18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부잠사¹⁾, 갈저, 우뭇가사리, 통조림 용 굴, 백삼(미삼 포함), 통조림용 밤, 떡갈잎, 명개잎, 사과, 배, 냉동용딸기</td> <td>9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김, 양송이, 송이, 오징어, 톳, 뱀장어, 건미역, 염장미역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 : 1) 부잠사는 누에씨 생산농가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한함</p> <p>제27조~제37조 (생 략)</p> <p>부 칙</p> <p>이 세칙은 1996.1.1부터 시행한다.</p>	자 금 별	용자대상품목	용자기간	수집자금	김, 우뭇가사리, 갈저, 오징어, 톳	90일 이내	비축자금	삼견	180일 이내	춘견	240일 이내	추견	210일 이내	미과제조용 찹쌀	180일 이내	부잠사 ¹⁾ , 갈저, 우뭇가사리, 통조림 용 굴, 백삼(미삼 포함), 통조림용 밤, 떡갈잎, 명개잎, 사과, 배, 냉동용딸기	90일 이내	김, 양송이, 송이, 오징어, 톳, 뱀장어, 건미역, 염장미역		<p>- 용자대상품목에 염장미역 추가 · 용자기간 : 90일 이내</p> <p>- 시행일자 명시</p>
자 금 별	용자대상품목	용자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집자금	김, 우뭇가사리, 갈저, 오징어, 톳	9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축자금	삼견	18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춘견	24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추견	21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미과제조용 찹쌀	18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잠사 ¹⁾ , 갈저, 우뭇가사리, 통조림 용 굴, 백삼(미삼 포함), 통조림용 밤, 떡갈잎, 명개잎, 사과, 배, 냉동용딸기	9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김, 양송이, 송이, 오징어, 톳, 뱀장어, 건미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 금 별	용자대상품목	용자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집자금	김, 우뭇가사리, 갈저, 오징어, 톳	9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축자금	삼견	18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춘견	24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추견	21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미과제조용 찹쌀	18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잠사 ¹⁾ , 갈저, 우뭇가사리, 통조림 용 굴, 백삼(미삼 포함), 통조림용 밤, 떡갈잎, 명개잎, 사과, 배, 냉동용딸기	90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김, 양송이, 송이, 오징어, 톳, 뱀장어, 건미역, 염장미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